

세 액 공 제 신 청 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(전화번호:)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신청 내용	⑥ 구	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	영 제4조제8항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I				
⑩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6조의4제4항		14Z				
⑩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5항		14M				
⑩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9항		18D				
⑩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12항		18L				
⑩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1항		13L				
⑩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1항		13M				
⑩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1항		16A				
⑩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1항		16B				
⑩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제6항		176				
⑩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3제14항		14T				
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4제12항		14U				
⑩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2조의2제5항		18E				
⑩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영 제12조의3제14항		18N				
⑩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	영 제12조의3제14항		18P				
⑩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영 제17조제5항		18H				
⑩ 통합투자세액공제	영 제21조제11항		13W				
⑩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1제7항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8I				
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34				
⑩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2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77				
⑩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	영 제22조의3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4A				
⑩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4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42				
⑩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5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36				
⑩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6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35				
⑩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8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	14B				

⑥ 구	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⑫6	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9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B			
⑫7	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0	18C			
⑫8	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	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	14N			
⑫9	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2제3항	14S			
⑬0	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4X			
⑬1	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8J			
⑬2	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4제17항	14Y			
⑬3	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5제11항	18A			
⑬4	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7제10항	18F			
⑬5	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7조의3제3항	18K			
⑬6	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	법 제30조의2제3항	14H			
⑬7	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4Q			
⑬8	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8G			
⑬9	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6조의3제7항	10B			
⑭0	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9조의11제4항	18Q			
⑭1	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납세의무자)	영 제104조의5제6항	184			
⑭2	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(세무법인)	영 제104조의5제6항	14J			
⑭3	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14제2항	14E			
⑭4	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0제4항	14O			
⑭5	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2제3항	14P			
⑭6	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1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I			
⑭7	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2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K			
⑭8	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4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R			
⑭9	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7제3항	18M			
⑮0	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법 제122조의4제3항	14W			
⑮1	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법 제126조의7제13항	14V			
⑮2	세액공제 합계		1A3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,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.
2.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.
3.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4.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공란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⑦ 근거법령란에서 ‘법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‘영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합니다.

투자자산 명세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과 세 연 도

상호 또는 법인명

사업자등록번호

1.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

- | | | | |
|-----|-----|--|------------|
| [] | 1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(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) | [코드 : 131] |
| [] | 2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(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34] |
| [] | 3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6(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35] |
| [] | 4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5(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36] |
| [] | 5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(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77] |
| [] | 6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3(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4A] |
| [] | 7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8(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4B] |
| [] | 8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9(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8B] |
| [] | 9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(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) | [코드 : 14N] |
| [] | 10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4(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42] |
| [] | 11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2항(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8L] |
| [] | 12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1(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| [코드 : 18I] |
| [] | 13) |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1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| [코드 : 13W] |

2. 투자 자산별 명세

(단위: 원)

[illegible]

첨부서류	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(EMS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-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-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,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작성 방법

※ 동 서식의 제4조, 제22조,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, 제22조의8, 제22조의9, 제22조의11은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른 조문을 의미합니다.

※ 각 과세연도에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, 제22조,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, 제22조의8, 제22조의9, 제22조의11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2항, 제21조제11항,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
- "2. 투자 자산별 명세"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,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.
-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"1.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"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(숫자 1~13)를 적습니다.
* 예시)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→ 7
-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(투자처)의 소재지를 시/도 + 시/군/구 + 읍/면 + 도로명까지 적습니다.
-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·부, 리스 자산(금융리스 제외) 여부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·부를 적습니다.
-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.
-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 받거나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